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57
----------	-------

발의연월일 : 2019. 2. 15.

발 의 자 : 김관영·이동섭·김수민
정병국·김삼화·최도자
유의동·박선숙·조배숙
채이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매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음주운전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최근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비율은 2012년 16%에서 2016년 19.1%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만성적·상습적인 음주운전의 근절을 위해 이미 북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 예방책으로 시동잠금장치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시동잠금장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때에는 일정기간 음주시동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음주시동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 등만을 운전하도록 함(안 제 55조의3 신설).
- 나. 이를 위반하여 음주시동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3조제1호의2 신설).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3(음주시동방지장치의 장착) ①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간 동안 음주시동방지장치(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가 설치된 자동차 등만을 운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주시동방지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55조의3을 위반하여 음주시동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신설>

2. ~ 5. (생략)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55조의3을 위반하여 음
주시동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적합
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2. ~ 5. (현행과 같음)